

### 자격 규정 변경

1. 2024년 11월 16일에 자격 규정이 개정되어 자격 등급과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 기존 자격증을 신규 개정에 따라 새로 발급 예정
3.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 자격심사까지 지원자는 기존의 자격 규정과 새로운 자격 규정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등급은 변경된 자격등급이 부여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1. 명칭 변경
  - 기독교/목회 상담사 감독 (동일)
  - 기독교/목회 상담사 1급 (기존 전문가)
  - 기독교/목회 상담사 2급 (기존 1급)
  - 기독교/목회 상담사 3급 (기존 2급)
2. 감독 특별 응시 및 자문회원
  - 해외 감독 자격 보유자
  - 언어 비매개 치료감독 자격 보유자
  - 감독 2인 또는 회장단의 추천
  - 특별자문회원 : 전문성과 협회 공헌 가능성이 인정된 자로, 감독 2인 또는 회장단 추천자



### 2급 수련 요건

- 개인상담 5사례 이상, 총 60시간 이상
- 집단상담 집단원으로 15시간 참여
- 접수면접 2회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5사례 이상
- 개인 수퍼비전 30시간 이상
- 집단 수퍼비전 30시간 이상

### 1급 수련 요건

- 상담 경력 4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은 개인상담)
- 접수면접 5회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10사례 이상
- 집단상담 집단원으로 30시간 이상
- 집단상담 리더/코리더로 15시간 이상
- 심리검사 수퍼비전 10사례 이상
- 집단상담 수퍼비전 2집단 이상

### 1급 수련 요건

- 개인 수퍼비전:
  - 2급 취득 후: 감독에게 30시간 이상
  - 1급 바로 지원 시: 감독 2인에게 60시간 이상 (30시간은 1급 회원 가능)
- 집단 수퍼비전:
  - 2급 취득 후: 30시간 이상
  - 1급 바로 지원 시: 60시간 이상



### 특별응시 및 자문회원

- 감독 특별 응시 자격:
  - 해외 감독 자격 보유자
  - 언어 비매개 치료감독 자격 보유자
  - 감독 2인 또는 회장단의 추천
- 특별자문회원:
  - 전문성과 협회 공헌 가능성 인정된 자  
로서 감독 2인 또는 회장단 추천

### 감독 자격 요건

-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경력
- 본 협회 인정 기관/단체에서 감독이상  
자격 보유한 자로서, 본 협회 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
- 변경사항  
- 개인상담 24시간 이수 요건 삭제



## [신규 기독/목회상담사 3급]\_심사 항목

심사 항목	목회상담사 3급	기독교상담사 3급	비고
응시자격	<p>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학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li> <li>2. 신학 또는 기독교관련 전공 졸업자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24학점 이상 상담 관련 과목 이수</li> </ol>	<p>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li> <li>2. 학점이 부족할 경우,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 등에서 2배 수 학점 이수(고졸이상)</li> </ol>	기존 기독/목회상담사 2급과 동일
회원가입	연회비 완납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li> <li>▪ 발달심리</li> </ul>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li> <li>▪ 발달심리</li> </ul>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 60점 이상 합격(100점 만점 기준) 합격한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
서류심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격심사신청서</li> <li>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협회 양식)</li> <li>3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li> <li>4)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학점부족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등 추가 제출)</li> <li>5) 목회상담지원동기서(A4 2매 이상)</li> </ol>		
구술면접시험	없음		
수련 항목	없음		

[신규 기독/목회상담사 2급] ①심사 과정

심사 항목	목회상담사 2급	기독교상담사 2급	비고
응시자격	<p>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p> <p>1. 신학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24학점 이상 이수 2. 신학 또는 기독교관련 전공 졸업자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36학점 이상 상담 관련 과목 이수</p>	<p>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p> <p>1. 대학(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24학점 이상 이수 2. 이 부족할 경우,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 등에서 1.5배수 학점 이수</p>	기존 기독/목회상담사 1급 기준과 동일
회원가입	연회비 완납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회/기독상담윤리(상담과 기독교윤리)</li> <li>▪ 목회/기독상담의 이론과 실제</li> <li>▪ 상담과 신학</li> <li>▪ 목회상담과 수퍼비전(1급필수)</li> </ul>		4과목 중 2과목 선택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회상담과 신학(학점 이수 내역에서 동일과목이 있을 경우 대체 가능)</li> <li>▪ 정신분석적 상담이론</li> <li>▪ 현대심리치료</li> <li>▪ 가족치료</li> <li>▪ 이상심리와 심리평가</li> </ul>		<p>총 5과목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 60점 이상 합격(100점 만점 기준) 합격한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p>
서류심사	<p>1) 자격심사신청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협회 양식) 3)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학점부족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등 추가 제출) 5) 개인상담증명서 6) 상담경력증명서(접수면접, 상담, 심리검사 실시 내역) 7) 개인수퍼비전 증명서 8) 집단수퍼비전 증명서 9)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확인서 각 1부(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10) 상담사례보고서 11) 신학에세이</p>		<p>상담경력증명서는 각 학교, 기관별 양식으로 작성 회기, 기간, 상담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후 기본의 적인날인을 요함</p>
구술면접시험	상담사로서의 소명, 상담이론과 실제, 협회 참여 및 기여도, 상담사로서의 윤리의식		<p>각 항목별 25점 70점 이상 합격(100점 만점 기준)</p>

## [신규 기독/목회상담사 2급] ②수련 항목

수련 항목	수련 자격		비고
개인상담	협회 소속 1급 이상의 상담사 1인에게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함		1:1 면접상담
집단상담	협회 소속 1급 이상의 리더가 진행하는 집단상담에 15시간 이상 집단원으로 참여		임상목회교육 1Unit(기본 400시간)은 집단상담 참여 15시간 인정
상담경력	개인상담	5사례 이상의 개인상담 60시간 이상	개인, 부부, 가족, 집단상담 등
	접수면접	2회 이상 실시	
	심리검사	2개 이상의 심리검사 5사례 이상(5시간 이상)	규정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를 필수로 하되 그 이외 표준화 검사 1개 실시할 수 있음
개인 수퍼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의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 수퍼비전 받아야 함.</li> <li>▪ 15시간 한도 내에 감독회원의 수퍼비전을 받는 1급 회원에게 받을 수 있음.</li> <li>▪ 감독 1인에게 15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시간 만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수퍼비전은 1주에 4시간까지만 인정</li> <li>- 최대 2인으로 조를 구성, 두 사람이 2시간 동안 모두 자기 사례를 발표해야 2시간 인정</li> <li>- 수퍼비전의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li> <li>- 1급 회원에게 수퍼비전에 받을 경우, 감독회원의 수퍼비전 확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li> </ul>
	심리검사 수퍼비전	1급 및 감독회원 1인 이상에게 5사례 이상 1사례 진행 시, 심리검사 2개 이상 실시 및 해석	
집단 수퍼비전	30시간 이상 2인 이상의 감독회원에서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진행</li> <li>- 한주에 최대 4시간, 1일 4시간 인정하지 않음</li> <li>- 임상목회교육 1Unit은 집단수퍼비전 40시간 인정</li> <li>- 본 협회 임상사례모임 회당 2시간 인정</li> </ul>
임상사례발표	임상사례모임에서 자신의 상담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해야 함		각 항목(사례개념화, 상담구조화, 상담과정, 수퍼비전에 대한 수용능력, 상담윤리준수)당 20점 배점으로 시행세칙에 부합하는 기준
상담사례보고서	5회기 이상 진행된 상담사례를 협회 양식에 따라 A4 5매 이상 제출		최소 1회기 이상의 축어록 전문을 포함
신학 에세이	자신의 신학적 관점 명시, 목회상담적 적용 에세이 A4 3매-5매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임상사례모임	3회 이상 참가		

## [신규 기독/목회상담사 1급] ①심사 과정

심사 항목	목회상담사 1급	기독교상담사 1급	비고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항목 모두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 인정하는 대학(원), 규정자격위원회 인정 대학원 졸업</li> <li>2. 목회상담사 2급 기준 충족</li> <li>3. 목회상담사 2급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분야 종사</li> </ol> </li> <li>▪ 학점관련 항목 중 하나에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급 자격취득 이후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 이수</li> <li>2. 상담관련 석사학위 받은 후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li> <li>3. 석사에서 상담학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상담학 전공 박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6학점 이상 수료한 자</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항목 모두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 인정하는 대학(원), 규정자격위원회 인정 대학원 졸업</li> <li>2. 기독교상담사 2급 기준 충족</li> <li>3. 기독교상담사 2급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분야 종사</li> </ol> </li> <li>▪ 학점관련 항목 중 하나에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급 자격취득 이후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 이수</li> <li>2. 상담관련 석사학위 받은 후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li> <li>3. 석사에서 상담학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상담학 전공 박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6학점 이상 수료한 자</li> </ol> </li> </ul>	기존 기독/목회상담사 전문가 기준과 동일
회원가입	3년 이상 연회비 완납(미납분 일괄 납부 가능)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회/기독상담윤리(상담과 기독교윤리)</li> <li>▪ 목회/기독상담의 이론과 실제</li> <li>▪ 상담과 신학</li> <li>▪ 목회상담과 수퍼비전(1급필수)</li> </ul>		4과목 중 2과목 선택 보수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3년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연구방법론</li> <li>▪ 종교심리와 영성</li> <li>▪ 상담이론</li> <li>▪ 임상과 심리평가</li> <li>▪ 상담 수퍼비전과 상담윤리</li> </ul>		총 5과목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 60점 이상 합격(100점 만점 기준) 합격한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
서류심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격심사신청서</li> <li>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협회 양식)</li> <li>3)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li> <li>4)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학점부족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등 추가 제출)</li> <li>5) 자격증 사본(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제출)</li> <li>6) 연회비 완납증명서(최근 3년)</li> <li>7) 개인상담증명서(2급 자격 소지자는 면제)</li> <li>8) 상담경력증명서(접수면접, 심리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시 내역)</li> <li>9) 임상사례발표확인서</li> <li>10) 개인수퍼비전 증명서</li> <li>11) 집단수퍼비전 증명서</li> </ol>		상담경력증명서는 각 학교, 기관별 양식으로 작성 회기, 기간, 상담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후 기관의 적인날인을 요함

	12)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확인서 각 1부(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13) 추천서 14) 상담사례보고서(A4 5매 이상) 15) 목회/기독교 상담 관련 소논문(A4 5매-10매)	
구술면접시험	상담사로서의 소명, 상담이론과 실제, 협회 참여 및 기여도, 상담사로서의 윤리의식	각 항목별 25점 70점 이상 합격(100점 만점 기준)

[신규 기독/목회상담사 1급] ②수련 항목

수련 항목	수련 자격		비고
개인상담	협회 소속 1급 이상의 상담사 1인에게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함		2급 자격 소지자는 개인상담증명서 제출 면제
집단상담	협회 소속 1급 이상의 리더가 진행하는 집단상담에 30시간 이상 집단원으로 참여해야 함		임상목회교육 1Unit(기본 400시간)은 집단상담 참여 15시간 인정
상담경력	개인상담	400시간 이상 상담 경력 (개인,부부,가족,집단상담)	400시간 중 300시간 이상은 개인상담이어야 함
	접수면접	5회 이상 실시	
	심리검사	2개 이상의 심리검사 10사례 이상(10시간 이상)	규정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를 필수로 하되 그 이외 표준화 검사 1개 실시할 수 있음
	집단상담의 리더(코리더)	15시간 이상	
개인 수퍼비전	▪ 2급 자격취득 후,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 ▪ 1급으로 바로 지원 시, 60시간 이상 2인 이상의 감독회원에게 받아야 함. ▪ 감독 1인에게 2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받을 수 있음. ▪ 30시간 한도 내에 감독회원의 수퍼비전을 받는 1급 회원에게 받을 수 있음.		- 개인수퍼비전은 1주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최대 2인으로 조를 구성, 두 사람이 2시간 동안 모두 자기 사례를 발표해야 2시간 인정 - 수퍼비전의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 단, 1일에 4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 1급회원에게 받을 경우, 감독회원의 수퍼비전 확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
	심리검사 수퍼비전	1급 및 감독회원 1인 이상에게 10사례 이상	
	집단상담 수퍼비전	1급 및 감독회원 1인 이상에게 2집단 이상(1집단은 15시간 이상)	
집단 수퍼비전	▪ 2급 자격취득 후,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 ▪ 1급으로 바로 지원 시, 60시간 이상 2인 이상의 감독회원에서 받아야 함. ▪ 감독 1인에게 2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받을 수 있음		-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진행 - 한주에 최대 4시간, 1일 4시간 인정하지 않음 - 임상목회교육 1Unit은 집단수퍼비전 40시간 인정 - 본 협회 임상사례모임 회당 2시간 인정
임상사례발표	임상사례모임에서 자신의 상담사례를 1회 이상 발표 상담확인서 발급받아 보관 후 제출		각 항목(사례개념화, 상담구조화, 상담과정, 수퍼비전에 대한 수용 능력, 상담윤리준수)당 20점 배점으로 시행세칙에 부합하는 기준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2급 자격취득 후 학술대회 1회, 임상사례모임 5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 제출 1급으로 바로 지원 시, 학술대회 2회, 임상사례모임 8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 제출		참가 확인서는 협회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 [신규 기독/목회상담사 감독] ①심사 과정

심사 항목	목회상담사 감독	기독교상담사 감독	비고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항목 모두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 인정하는 대학원, 규정자격위원회 인정 대학원 졸업</li> <li>2. 목회상담사 1급 기준 충족</li> <li>3. 목회상담사 1급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분야 종사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감독 이상의 자격으로 1년 이상 본 협회 회원으로 활동</li> </ol> </li> <li>▪ 학점관련 자격은 목회상담사 1급과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항목 모두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 인정하는 대학원, 규정자격위원회 인정 대학원 졸업</li> <li>2. 기독교상담사 1급 기준 충족</li> <li>3. 기독교상담사 1급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분야 종사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감독 이상의 자격으로 1년 이상 본 협회 회원으로 활동</li> </ol> </li> <li>▪ 학점관련 자격은 기독교상담사 1급과 동일</li> </ul>	기준 기독/목회상담사 감독 기준과 동일
회원가입	3년 이상 연회비 완납(미납분 일괄 납부 가능)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서류심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격심사신청서</li> <li>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협회 양식)</li> <li>3)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li> <li>4)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li> <li>5) 자격증 사본(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제출)</li> <li>6) 연회비 완납증명서(최근 3년)</li> <li>7) 상담경력증명서(접수면접, 심리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시 내역)</li> <li>8) 임상사례발표확인서</li> <li>9) 개인수퍼비전 시행증명서</li> <li>10) 수련수퍼비전증명서</li> <li>11)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확인서 각 1부(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li> <li>12) 감독회원 2인 이상의 추천서 각 1부</li> <li>13) 상담수퍼비전 에세이 “상담 수퍼비전에 대한 이론과 실제” (A4 5매 이상)</li> <li>14)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논문게재(예정) 확인서</li> </ol>	<p>상담경력증명서는 각 학교, 기관별 양식으로 작성/ 회기, 기간, 상담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후 기관의 직인날인을 요함</p> <p>「목회와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또는 상담관련 학술지 단독 및 제1저자 논문게재(예정) 확인서 인정</p>	
구술면접시험	상담사로서의 소명, 상담이론과 실제, 협회 참여 및 기여도, 상담사로서의 윤리의식	각 항목별 25점 70점 이상 합격(100점 만점 기준)	

## [신규 기독/목회상담사 감독] ②수련 항목

수련 항목	수련 자격	비고
상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시간 이상 상담경력(개인,부부,가족,집단상담 등)</li> <li>▪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 상담학전공 박사학위(Ph.D. 또는 동등 학위) 취득 시, 500시간 인정</li> <li>▪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10년 이상 상담학 관련 교수 혹은 강사로 재직한 경우, 500시간 인정</li> </ul>	상기 경력 중복 인정 가능
개인 수퍼비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자격취득 후, 총 100시간 실시</li> <li>▪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25시간 이상 받아야 함</li> <li>▪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반드시 개인으로 진행되고, 한 주에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li> <li>▪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2인 이상의 감독회원에게 1인 15시간 이상 받아야 함</li> </ul>	
임상사례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자격취득 후 본 협회 주관 임상사례모임에서 상담사례를 1회 이상 발표</li> <li>▪ 상담확인서 발급받아 보관 후 제출</li> </ul>	각 항목(사례개념화, 상담구조화, 상담과정, 수퍼비전에 대한 수용능력, 상담윤리준수)당 20점 배점으로 시행세칙에 부합하는 기준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급 자격취득 후 학술대회 1회 이상, 임상사례모임 5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 제출</li> <li>▪ 해외 거주 협회회원의 경우,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 참석 또는 협회 제공 동영상 강의 3학점 수강으로 1회 참석을 대체</li> <li>▪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자격규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수퍼바이저가 감독하는 임상사례모임으로 대체</li> </ul>	참가 확인서는 협회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 [신규 기독교상담사 감독 자격 특별 응시]

심사 항목	기독교상담사 감독 자격 특별 응시	비고
기본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 중 하나에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협회의 감독에 준하는 해외 자격증 소지자</li> <li>2.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언어를 주요 매개로 하지 않는 치료 감독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li> <li>3. 2인 이상의 감독이나 회장단이 추천을 받은 자</li> </ol> </li> <li>▪ 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자</li> </ul>	신설
회원가입	3년 이상 연회비 완납(미납분 일괄 납부 가능)	
수련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경력과 수련수퍼비전 경력은 보유하는 있는 자격증을 바탕으로 자격심사과정에서 판단한다</li> <li>▪ 임상사례모임 발표 1회 (본 협회 혹은 이에 준하는 사례발표 경력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하며 자격심사과정에서 판단)</li> <li>▪ 사례발표 확인서</li> <li>▪ 본 협회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 확인서 제출</li> <li>▪ 해외 거주 시, 본 협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 참석 혹은 협회 제공 동영상 강의 3학점 이상 수강으로 1회 참석 대체</li> <li>▪ 본 협회의 임상사례모임에 2회 이상 참가</li> </ul>	
서류심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격심사신청서</li> <li>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협회 양식)</li> <li>3)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li> <li>4)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li> <li>5) 자격증 사본</li> <li>6) 연회비 완납증명서(최근 3년)</li> <li>7) 임상사례발표확인서 또는 이에 같은하는 증명서</li> <li>8)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확인서 각 1부(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li> <li>9) 감독회원 2인 이상의 추천서 각 1부 (추천한 감독회원은 심사년도 본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li> <li>10) 상담수퍼비전 에세이 “상담 수퍼비전에 대한 이론과 실제” (A4 5매 이상)</li> <li>11)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혹은 이에 준하는 해외 저널 논문게재(예정) 확인서</li> </ol>	<p>상담경력증명서는 각 학교, 기관별 양식으로 작성/ 회기, 기간, 상담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후 기관의 직인날인을 요함</p> <p>「목회와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또는 상담관련 학술지 단독 및 제1저자 논문게재(예정) 확인서 인정</p>
구술면접시험	상담사로서의 소명, 상담이론과 실제, 협회 참여 및 기여도, 상담사로서의 윤리의식	각 항목별 25점 70점 이상 합격(100점 만점 기준)

[신규 특별자문회원]

심사 항목	특별자문회원	비고
위촉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항목 해당</li> <li>1. 본 협회에 공헌할 것이 기대되고 전문성이 인정되며, 2인 이상 감독 또는 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자</li> <li>2. 본 협회 회원으로 3년 이상 연회비 납부한 자(미납분 일괄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협회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 확인서 제출</li> <li>▪ 해외 거주 시, 본 협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 참석 혹은 협회 제공 동영상 강의 3학점 이상 수강으로 1회 참석 대체</li> <li>▪ 본 협회의 임상사례모임에 2회 이상 참가</li> </ul> </li> </ul>	신설
서류심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자유 양식)</li> <li>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li> <li>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li> <li>4) 전문성을 입증한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li> <li>5) 연회비 완납증명서(최근 3년)</li> <li>6)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확인서 각 1부(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li> <li>7) 감독회원 2인 이상의 추천서 각 1부 또는 회장단의 추천서 (추천한 감독회원은 심사년도 본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li> <li>8) 자신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5페이지 이상의 에세이 또는 논문</li> </ol>	